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인사혁신처장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근무예정기관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총 113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7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고용노동부	- 일반: 75명 - 장애인: 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환경부	5명	
관세직 (관세)	관세청	- 일반: 14명 - 장애인: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공업직 (일반기계)	고용노동부	6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시설직 (건축)	고용노동부	7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이번 추가선발과 같이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채시험 합격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근무예정기관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총 316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고용노동부	- 일반: 90명 - 장애인: 7명 - 저소득: 3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농림축산식품부	9명	
	보건복지부	- 일반: 9명 - 장애인: 1명	
관세직 (관세)	관세청	- 일반: 124명 - 장애인: 9명 - 저소득: 3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법무부	- 일반: 48명 - 저소득: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직 (전산개발)	법무부	- 일반: 10명 - 장애인: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이번 추가선발과 같이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채시험 합격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되며,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 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8.14.~8.17. (취소마감일 8.21. 21:00)	필기시험	10.13.	10.21.	11.28.
	면접시험	11.28.	12.12.~12.14.	12.28.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시행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4.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7.10.18.(수) 09:00 ~ 10.20.(금) 21:00]

8. 지방인재채용목표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small>[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small>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2017.10.21.(토) 12:00 ~ 10.23.(월) 21:00]
-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 (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채시험 합격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사.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아.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채용관리과(044-201-8242~825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